

의안번호	2213710
의 퇴 인	김동아 의원
회 답 일	2026. 1. 29.
추 계 번호	25A5726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①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②중소기업 인공지능 보급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③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안 제8조), ④규제배심원단 운영(안 제25조) 등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4억 7,500만원(연평균 2억 9,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50	—	—	—	—	50	10
중소기업 인공지능 보급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8조)	17	17	17	17	17	85	17
규제배심원단 운영(안 제25조)	18	18	18	18	18	90	18
합계	335	285	285	285	285	1,475	295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적용 및 보급 현황,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규제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재원의 확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예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	재량규정
4	안 제8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중소기업 및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안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6	안 제10조(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 시스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11조(인공지능 인식제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활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공로가 큰 공공기관, 관련 단체와 그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중소기업 및 전담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8	안 제12조(자금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도입 및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재량규정
9	안 제13조(인력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규정
10	안 제14조(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활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도입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 지원 2.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비용 지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인공지능기술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1	안 제15조(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및 기업 경영의 각 분야(이하 “분야등”이라고 한다)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야등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중소기업(이하 “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거나 육성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야등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응용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지원 2. 분야등의 인공지능기술과 관련 서비스의 실증 및 사업화, 공급과 수요연계 지원 3. 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4. 분야등의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표준화 지원 5. 공공과 민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공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분야등 인공지능 융합인력 양성 및 실무 교육,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등 지원 7. 그 밖에 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량규정
12	안 제16조(해외시장 진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 기업 또는 해외 기관과 협력 모델 개발 등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공동기술 개발 2. 해외 공동시장 개척 3.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4. 인공지능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 및 유치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17조(인공지능 기술 공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또는 시스템의 구조·설계에 대한 정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이용 정보를 공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사업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재량규정
14	안 제18조(소상공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활용 지원 2. 소상공인 인공지능 제품 및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 및 인프라 지원 3.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안 제19조(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 및 산업 간 데이터의 결합과 합성데이터의 생성·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시스템의 효과적인 훈련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의 암호화 방법 등의 개발 및 도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6	안 제20조(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 현장 노하우 및 작업지식 등(이하 “숙련기술등”이라 한다)의 데이터화를 통한 숙련기술 등의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숙련기술등의 수집, 데이터화 및 구조화 지원 2. 데이터화된 숙련기술등의 인공지능 기반 분석, 학습 및 활용 시스템 구축 지원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숙련기술등의 효율적인 전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작업 지능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숙련기술등의 데이터화 및 인공지능 기반의 보존과 전승, 고도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재량규정
17	안 제23조(고영향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에 대한 지원,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수립 등 관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런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8	안 제25조(규제배심원단)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또는 활용에 관련된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하 “규제배심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규제배심원단은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또는 활용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철회나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규제배심원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량규정
19	안 제29조(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지역 내 인공지능 관련 기업 및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계 지원 3.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재량규정
20	안 제30조(지역 특화 산업 융합 및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 특화 산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 융합 모델 발굴 및 개발 2. 인공지능 융합 기술의 사업화 지원 3. 지역 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 생산 또는 마케팅 지원	재량규정
21	안 제31조(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이하 “인공지능 확산허브”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확산허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3.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중소기업 인공지능 데이터의 생성 및 합성, 공유 및 거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6. 인공지능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8. 그 밖에 인공지능 확산허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과 인공지능 확산허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2	안 제32조(인공지능 확산허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 센터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시설, 실증시설 등 연구시설·장비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2	안 제6조(실태조사)	○	-
3	안 제7조(재원의 확보)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제정안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금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4	안 제8조(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	-
5	안 제9조(전담기관 지정 등)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정부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금·인력지원, 인공지능 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과 관련하여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AI 기술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현재 수행하고 있음
6	안 제10조(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시스템)	×	
7	안 제11조(인공지능 인식제고)	×	
8	안 제12조(자금지원 등)	×	
9	안 제13조(인력지원 등)	×	
10	안 제14조(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	
11	안 제15조(특화 인공지능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	
12	안 제16조(해외시장 진출 등)	×	
13	안 제17조(인공지능기술 공개 지원)	×	
14	안 제18조(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	
15	안 제19조(데이터 확보 및 품질향상)	×	
16	안 제20조(숙련기술 등의 데이터화)	×	

17	안 제23조(고영향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한 지원)	×	
18	안 제25조(규제배심원단)	○	-
19	안 제29조(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지원)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20	안 제30조(지역 특화산업 융합 및 협력)	×	
21	안 제31조(지역별 인공지능 확산허브 지정)	×	
22	안 제32조(인공지능 확산허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수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재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함

※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이외에, 본 추계에서는 ①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②중소기업 인공지능 보급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③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안 제8조), ④규제배심원단 운영(안 제25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추계 첫 해부터 3년마다 연구용역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2027년에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유사 연구사례로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및 혁신성장을 위한 법령체계 연구”(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5,000만원), “경기도 중소기업 인공지능 도입 실태조사 용역”((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2024년, 5,200만원) 등이 있음
 - 동 계획은 3년 주기로 수립하므로 법 시행 첫해인 2027년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	50	-	-	-	-	50	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중소기업 인공지능 보급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하고, 연간 2억 5천만원씩 추계기간 동안 총 1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의 실태조사 사례를 고려하여 동 조사에 2억 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실태조사 실시 사례로는 「기술혁신형기업 정밀실태조사」(2025년, 1억 5천만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2025년, 3억원),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2025년, 3억 2,200만원) 등이 있음
 - 제정안에서 실태조사의 주기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3] 중소기업 인공지능 보급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인공지능 보급 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은 회의 참석수당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
까지 5년간 총 8,500만원(연평균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참석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17명, 회의 횟수는 분기당 1
회씩 연 4회로 가정

— 위원회의 위원 수는 안 제8조제2항에 따라 20명으로 하고, 위원장인 중소벤처기업
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인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과학기술방송통신부의
차관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민간위원은 정원 20명에서 당연직 위원 3명을 제외한
17인으로 가정

○ 수당 단가는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
성 세부지침」¹⁾을 고려하여 1회 대면회의시 25만원을 지급함

○ 위원회의 위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수당은 민간위원 수에 회의 횟수와 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
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2027~2031년: 민간위원 수(17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25만원) =
연 1,700만원

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
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4]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 위원회 설치(안 제8조)	17	17	17	17	17	85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규제배심원단 운영(안 제25조)

□ 규제배심원단 운영 비용은 배심원의 참석수당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500만원(연평균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규제배심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유사사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농식품 R&D 국민 배심원단’을 참고하여 민간배심원 30인으로 구성하고 활동수당은 회당 1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 － 농식품 R&D 국민 배심원단은 민간(전문가, 일반국민)인 30명으로 구성되고, 회의 참석에 따라 1회 150,000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함
- 다만, 규제배심원단의 활동 횟수 등을 현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연간 대면 회의 4회로 가정함
- 배심원 수는 결원 없이 유지되고, 배심원 회의 개최·참석 횟수 및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규제배심원단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는 배심원 수에 회의 횟수와 활동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 2027~2031년: 배심원 수(30명) × 회의 횟수(4회) × 수당 단가(15만원) = 연 1,800만원

[표 4] 규제배심원단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규제배심원단 운영 (안 제25조)	18	18	18	18	18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assembly.go.kr

[참고자료] 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

[참고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일반회계	—	—	64,500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제조혁신 구축 지원 / 선도형 제조혁신 / 자율형공장)	일반회계	6	32,000	95,000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확산(제조혁신 구축지원 / 선도형 제조혁신 / 대중소 상생형)	일반회계	—	4,000	10,000
기술혁신기반조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일반회계	3,941	7,103	7,103
데이터인프라구축(정보화)	일반회계	6,900	5,836	5,922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R&D)	일반회계	43,665	51,690	23,326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일반회계	10,888	10,888	10,888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	일반회계	4,045	3,829	4,159
중소벤처행정정보화(정보화)(대민정보시 스템 통합운영체계 구축)	일반회계	3,263	7,353	10,464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일반회계	—	—	3,600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일반회계	2,000	6,000	6,000
창업사업화지원(창업패키지(초기·도약))	일반회계	—	21,000	20,500
창업사업화지원(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AX 특화 지원))	일반회계	—	15,900	20,000
창업성장기술개발(R&D)(TIPS)	일반회계	—	—	60,900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스케일업팁스)	일반회계	—	—	36,680
표준공정 기반 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R&D)	일반회계	—	—	3,000
제도약속진(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35,000	49,000

세부사업 (내역사업)	회계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
창업성공패키지(AI딥테크 특화과정)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	19,500
창업성공패키지(스타트업AI기술 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2,700	2,300	2,900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 신성장기반자금(AX스프린트우대트랙)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	-	140,000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	14,360
소상공인재기지원(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	-	5,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